## **Human Information**

: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

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,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·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. 이 시리즈는 〈산업안전보건법 제·개정사〉(2015, 고용노동부)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.

**정리** 대외홍보팀

# 산업안전보건법의 제·개정 요지(10)





## 2.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지 (제31차~32차)

## 제31차 개정(법률 제11862호, 2013, 6, 4,)

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[2013, 6, 4, 법률 제11862호]

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화학물질관리법

[본문 생략]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

제11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⑥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유해화학물 질 관리법」과 관련된"을 "「화학물질관리법」과 관련 된"으로 한다.

20부터 29까지 생략

제12조 생략

## 제32차 개정(법률 제11882호, 2013. 6. 12.)

[일부개정]

## 개정이유

근로자건강센터 등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,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등 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는 한편, 수급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, 안전인증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①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·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 · 보건관리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의무도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15조 및 제16조).
- ② 유해·위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 도급 인은 수급인 등에게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·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함(안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).
- ③ 공사과정에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



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9조의 3 신설).

- ④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에 수입자를 추가하고 사용 중인 안전인증 대상품 중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기계 · 기구에 대해서만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또는 설치 · 이전 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해안 제34조).
-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암 등 중대한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 · 수 입하는 자 등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· 위험 성을 조사하여 조사결과 등을 제출하게 하고, 제 출된 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제 조 · 수입하는 자 등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0조)
- ⑥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(안 제61조제3호 신설).

## 3. 조항별 제·개정 연혁 및 개정 내용

제1장 총칙

#### 제1조(목적)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산업안전 ·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·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정('81, 12, 31)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산업안전·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·증진함 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1차 개정('90. 1. 13)

## 개정사유

사업주, 근로자, 정부뿐만 아니라 기계·기구·설비 등의 설계자, 제조자 및 수입하는 자, 사업장 내에서 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·보건관리자, 안전담당 자 및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당사자 등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표현하고

- 각 계층의 안전의식을 새롭게 강조하여 궁극적으로 자율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조성 및 재해감소 효과를 거두기 위함

#### 개정내용

확립하여 →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

## 제2조(정의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- 1."산업재해"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물·설비·원재료·가스·증기·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.
- 2. "근로자"란 「근로기준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
- 3. "사업주"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
- 4."근로자대표"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, 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.
- 5. "작업환경측정"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로(試料)를 채취하고 분석 ·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- 6. "안전·보건진단"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·평가를 말한다.
- 7. "중대재해"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 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.

## 제정('81, 12, 31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산업재해"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·설비·원재료·가스·증기·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.
- 2. "근로자"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.
- 3. "사업주"라 함은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하다.

